

택배기사 근로여건 개선 종합 대책 마련

산재보험 의무가입 적용, 밤샘주차 허용구역 확대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난 달 23일 제91차 국민경제대책회의, 28일 제8차 시민정책점검회의 및 지난 8일 제1차 친서민대책점검회의를 거쳐 택배기사 종사여건 개선 대책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급변 개선대책은 지난달 23일 대통령께서 택배터미널 현장을 직접 방문해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택배기사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계부처에 대해 개선대책 마련을 지시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그동안 택배기사는 장시간(일 평균 12시간이상) 근무로 업무상 재해에 노출되어 있으나 산재보험 의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고, 소속 영업소등과의 업무상 종속관계

로 인한 직·간접적 불이익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이 미흡했다.

이외에도 밤샘주차 허용지역 부족, 불공정 지입계약, 사업용택배차량 부족 등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됨에 따라 국토해양부·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의 주요내용은 우선, 운송업체에 지입으로 소속된 택배기사에 대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위·수탁(지입) 계약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표준 지입계약사항(계약기간, 차량소유관계 등)을 법제화하고, 시·도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여 지입 관련 분쟁해결을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 표준계약사항 및 분쟁조정협의회 근거규정이 포함

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공포(2011.6.15)됨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하위법령 마련을 추진 중이다.

택배기사를 보호하기 위해 산재보험 적용, 재해예방 「안전·보건 가이드」 개발·보급, 실업급여 적용 등의 보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관광공사 앞 T2 마당에서 동계올림픽 개최지 발표 중계방송을 시청하던 이참 시장을 비롯한 한국관광공사 임직원과 시민들이 지난 7일 새벽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된 후 기뻐하며 환호하고 있다.

국토부, 부적격 건설업체 4,762개사 적발

국토해양부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 퇴출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총 54,384개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소재불명·조사거부 등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 4,762개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부적격 업체는 전년도 실태조사결과 적발된 부적격업체(4,622개사)에 비해 약 3.0%가 증가한 것이다. 이는 서류미제출 등 조사불응업체수가 전년에 비해 다소

증가(2010년 2,001→2011년 2,479)한 것이 주원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토해양부가 대한건설협회 등 4개 건설협회에 위탁하여 시행한 서류조사 및 방문조사 결과로서, 종합·전문건설업체별로는 종합건설업체는 11,489개 업체 중 14.3%인 1,645개 업체, 전문건설업체는 42,895개 업체 중 7.3%인

3,117개 업체가 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기준별 위반유형으로는 자본금 미달이 1,541건(16.8%), 기술능력 미달이 1,309건(14.3%), 보증가능금액 미달이 282건(3.1%), 자료미제출 등이 2,479건(27.0%)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등록관청)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하게 되고, 처분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못할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을 받게 된다.

소규모 토지 활용 보금자리주택 공급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보금자리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소규모(30만㎡ 미만) 보금자리지구도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사업절차 간소화, 공익·복지 확보 비율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고 지난 4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소규모 보금자리지구는 대규모 지구가 사업기간이 길고, 초기 보상비 부담이 크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율리 과천지식정보타운지구와 같이 지자체가 추진 중이던 지역현안사업을 보금자리지구로 개발할 경우, 지역현안사업의 핵심사업을

포함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이번에 개정된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의 주요 내용은 우선 현재 보금자리지구는 지구지정을 한 후 지구계획을 확정하고 있으나, 규모가 작은 점을 감안하여 소규모 지구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지구지정을 제안할 때 지구계획도 승인 신청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구지정시 지구계획도 포함하여 확정하도록 하였다.

소규모 지구의 경우 지구지정과 지구계획을 통합하여 확정함으로써 3~6개월 정도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택건설사

업계획 승인(지자체나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한함)은 보금자리주택법령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할 계획이다.

또 도시지원시설을 중심으로 한 지역현안사업을 보금자리지구로 추진할 경우, 지역발전과 보금자리주거의 지속성 향상을 위해 지자체가 추진 중인 사업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급변 하반기에 소규모 보금자리지구도 추진할 계획으로 무주택 서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게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건설공제조합 보증심사제도 개선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철수)이 보증 심사 및 인수방법을 지난 1일부터 변경했다.

전문조합은 보증사고 위험 감소를 위해 조합원의 신용도 및 자금조달능력을 심사해 보증심사등급을 산출하고, 이에 따라 인수방법을 우대, 일반, 신용보강으로 차등해 적용키로 했다. 이번 제도변경은 국내의

건설경기 침체로 공사물량이 줄어 들고 이에 따른 저가수주 등의 사유로 건설업체의 부도가 크게 늘면서 보증사고도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대형업체 부도가 전문조합 보증사업에 큰 손실을 미치고, 그 영향이 전체 조합원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어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우수조합원은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보증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위 1%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보증심사체계를 도입해 우량 조합원에게는 보증인수조건을 완화하고, 부실우려가 있는 조합원에게는 신용보강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제도를 변경했다.

고위험업종 계약 및 선금금 보증

잔액이 100억원 이상인 조합원(약 100개사)은 채무상환능력, 공사 및 인사 관리 실태를 종합심사하는 심층심사제도를 적용하고, 보증 금액이 30억 이상 100억 미만인 조합원(약 200개사)은 재산 및 차입금 변동

을 심사하는 신인도심사제도를 적용하게 되며, 그 밖의 조합원(약 38,000개사)은 일반심사기준을 적용한다. 이는 전체 조합원에 대해 동일한 보증심사기준을 적용해 오던 기존 심사체계를 조합원별로 세분화해 적용하기 위한 조치이다.

코스카, 신영수 의원 · 한만희 차관 초청 간담회 개최

코스카(KOSCA·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박덕흠)는 지난 5일 경기도 수원 호텔캐슬 6층 다리아마드홀에서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과 한만희 국토해양부 제1차관, 도태호 건설정책관을 초청하여 「건설경기 활성화 위한 전문건설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앙회 박덕흠 회장을 비롯하여 전문건

설업계를 대표해 서울시회 박찬수 회장, 경기도회 표재석 회장, 인천시회 임승수 회장, 포항공사협회 회장 김혁 회장, 중앙회 류영창 상임부회장, 그리고 경기도회 부회장 및 감사, 운영위원, 성남시협의회 임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박덕흠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금 건설현장은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원도급자의 저가하도급 및 불법·불

공정행위가 여전하다”고 운을 펴며, “건설시장에서 상대적 약자일 수 밖에 없는 전문건설업계가 애로사항을 전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에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건설현장의 최일선에서 실제 시공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건설업계가 시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하였다. 이어 전문건설업계

는 애로 및 건의사항으로, 현재 정부가 개정을 추진 중인 건산법 하위법령(영·규칙)에 포함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및 직접시공 의무 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정부안대로 법이 개정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하도급 전문건설업체에게 돌아가게 되므로 개정안을 철회하거나 재검토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한만희 국토해양부 제1차관도 “전문건설업계 애로사항을 포함하여 급변 건산법령 개정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정부, 석유수출입업자 비축의무 폐지 입법예고

택시업계, 시장진입장벽 제거 통한 자율경쟁 요구

지식경제부는 지난 1일 휘발유, 경유 및 LPG 등 석유제품 가격안정을 위한 석유수출입업 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내수판매량의 30일분 비축의무무정폐지를 골자로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2008년부터 국내 LPG 가격이 급등하여 합리적인

고 자율적인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를 유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축의무 시설기준 등 진입장벽이 일 본 등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사실상 독점적으로 시장이 운영되는 문제점을 개선코자 택시업계가 의원입법 및 정부에 대한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 추진하여 온 사항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월 7일 석유가격 T/F의 결과로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 및 경쟁촉진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국내 석유업계의 과점구조를 깨고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석유수출입업자(석유정제업 자체외)의 비축의무 폐지를 검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석유수출입업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이 용이하게 되어 시장경쟁 체제 확보로 가격안정화가 기대된다.

